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충격요법’ 용어 수정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2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전기충격요법’ 용어 수정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4.
- (3) 회 부 일 : 2025. 3.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종종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II. 검토 의견

1. ‘전기충격요법’ 용어 수정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용어를 ‘뇌전
기조율치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illegible]

□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전신마취 중에 전기로 환자의 뇌에 경련을 유도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증상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치료¹⁾를 가리키는 현행법의 용어인데, 최근 그 효과가 ‘충격’

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련’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서 의학 칼럼 및 단행본에서는 ‘전기경련요법(electroconvulsive treatment, ECT)²⁾’ 또는 ‘전기경련치료(electroconvulsive therapy, ECT)’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전기충격요법 또는 전기경련요법은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 건 이상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의 치료에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476명만이 해당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³⁾, 이는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이 주는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가 그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전기충격요법이 갖는 어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뇌 전기조율치료’라는 명칭은 전기충격요법 외에 자기를 이용하여 전기적 자극을 주는 요법인 경두개 자기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⁴⁾ 또는 교류전류를 사용하는 전기충격요법과 달리 약한 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경두개직류자극술(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⁵⁾ 까지도 포섭되는 용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특히,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없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것임.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신경정신의학 제3판(2017) p. 838. 에서의 한글 표기임.

3) 대한의사협회 의견임.

4) 신경정신의학(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 p. 839) 에 따르면, 두피에 코일을 대고 강한 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전극 없이 전기적 자극을 일으켜 치료하는 방법임.

5) 신경정신의학(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 p. 839) 에 따르면, 1~3mA의 약한 직류전류를 두피에 흐르게 하는 치료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용어 변경에 따른 정신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는 사전에 전문가 등과의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뇌전기조율치료’는 현재의 전기충격요법 뿐 아니라 다른 뇌 자극 치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어서 대체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으로 보임. ○병명이나 치료법의 용어 개정에 대하여는 환자단체, 법조계, 전문학회, 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뇌에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안정화시키는 다른 치료법들이 있으므로 ‘뇌전기조율치료’라는 용어가 뇌를 전기로 조율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전기충격요법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경기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전기경련요법’으로의 수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개정안에서 사용한 ‘조율’은 치료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뇌전기조율치료’는 긍정적인 수용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98